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8나2069272(본소), 2018나2069289(반소) 판결
[손익정산금 청구의 소 · 매매대금]

재판경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886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8나2069272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한국무역보험공사

4. 한국수출입은행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보열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휘, 김성진

피고, 피항소인1. 주식회사 D

2. 주식회사 E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울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김익현, 윤여선

변론 종결2020. 7. 17.

판결 선고2020. 10. 23.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5가합548139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114,868,435원,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에게 82,440,293원, 원고(반소피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71,118,2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5. 8. 14.부터 2020. 10.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50,001,813원, 원고(반소피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57,529,8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5. 8. 14.부터 2020. 10.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12,013,214원, 원고(반소피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13,821,8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5. 8. 14.부터 2020. 10.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91,770,056원 및 그중 174,510,2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2018. 10. 3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7,259,856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2020. 10. 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마.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70%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나. 및 다.항과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114,868,435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만 한다.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에게 82,440,293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71,118,2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8.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선택적으로, 1) 1)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1,758,761,689원,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24,599,945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1,939,310,3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은 원고 A에게 156,647,993원,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2,191,048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172,728,9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또는,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717,386,125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825,391,8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은 원고 A에게 172,356,009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198,304,9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가. 반소 청구취지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533,736,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359,226,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자율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선박건조, 수리, 개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2),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H, I, J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010. 12. 3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한 G의 채권금융기관들이다.

2) 신규수주의 감소, 선박건조비용의 상승 등으로 G의 재무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을 포함한 G의 채권금융기관들은 2010. 7. 16.경 G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이하 '이 사건 자율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B을 주관은행으로 정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G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였다. 이 사건 자유헌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자유헌약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채권금융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G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채권금융기관운영협약 제2조를 준용하고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채권금융기관'이란 G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제공한 은행으로서 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및 그 승계인을 말한다.
- ② '주관은행'이란 B를 말한다.
- ③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 G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을 말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협약의 제·개정과 G의 경영정상화 추진 관련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8조(준용)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 운용방법 및 절차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협약',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2010. 7.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협약은 G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기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나.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협의회는 2010. 7. 20.경 제1차 협의회에서 ① 채권금융기관들의 G에 대한 채권 중 2010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원금의 상환을 2010. 10. 15.까지 유예하고, ②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 제Ⅲ의 2' 및 '이 사건 자유헌약 제5조'를 부의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 의안 내용

1. 손익정산기준액 확정 및 방법

(1) 채권금융기관 간 손익정산과 관련하여 손익정산 기준채권액은 2010. 7. 15.을 기준으로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손익정산은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 제Ⅲ의 2는 다음과 같다.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

Ⅲ.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처리기준

2. 손익정산

2-1. 용어의 정의

○ (손익정산) 공동관리절차 개시 이후 선박별 건조 시점의 차이 또는 신규 자금지원(RG 포함) 등으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각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제1차 협의회 소집일 전일자(2010. 7. 15.) 총 채권잔액(보증채무이행청구권 제외) 점유비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간 손익을 상호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 (손익정산 기준채권액) 제1차 협의회 소집일 전일자 기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잔액을 말한다.

○ (손익정산 기준채권액비율) 제1차 협의회 소집일 전일자 기준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잔액 대비 해당 금융기관의 채권잔액 점유비율을 말한다.

○ (손익정산 후 최종채권액) 손익정산시점에서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총 최종채권잔액에 개별 채권금융기관의 손익정산 기준채권액비율을 곱한 채권액으로, 손익정산 후 해당금융기관의 최종 채권잔액을 말한다.

* 손익정산 후 최종채권액 = 최종잔액 + 손익정산금액

* 최종잔액 = 손익정산 기준채권액 + 신규자금 - 회수금액 - 정산시점 선수금 등

○ (손익정산 금액) 손익정산 후 최종채권액에서 채권금융기관별 정산시점 최종채권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2. 손익정산 기준채권액 및 비율 산정

○ 손익정산 기준채권액의 산정 기준일자는 제1차 협의회 소집일 전일자 기준으로 적용한다.

2-3. 손익정산 시점

○ 협의회에서 공동관리절차 중단, M&A 등 손익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손익을 정산한다.

2-4. 손익정산 방법

○ 손익정산시점에서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총 최종잔액에 개별 채권금융기관의 손익정산 기준채권액비율을 곱하여 개별 채권금융기관별 '손익정산후 최종채권액'을 산정한다.

○ '손익정산 후 최종채권액'에서 개별 채권금융기관별 정산시점 채권 최종잔액을 차감하여 '손익정산금액'을 산정하고, 주채권은행은 '손익정산금액'이 (-)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을 납부받아 '손익정산금액'이 (+)인 금융기관 앞으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채권양수도, 현금 정산 등 손익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2) 이 사건 협의회는 2010. 7. 28. 제2차 협의회에서 주권은행을 원고 A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3) 이 사건 협의회는 2010. 8. 27. 제3차 협의회에서 ① G에 긴급운영자금 80억원(원고 A 고유 부담 23억 원, 추가 부담 57억 원) 및 기타 외화지급보증(RG3)) 약 1억 6,400만 달러를 지원하고, ② 채권금융기관의 손익정산 및 선수금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서 제정한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을 반영한 'G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을 따르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사건 처리기준은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 중 앞서 본 손익정산 부분 등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4) 피고(반소원고)는 위 제3차 협의회 의결에 부동의하고, 2010. 9. 3. 위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구 기촉법 제24조 제1항 등4) 에 따라 G에 대한 미수금 채권 원금 27억 1,400만 원과 연체이자 65,878,026원에 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5) 이 사건 협의회는 2010. 10. 12. 제4차 협의회에서 이 사건 협의회 주권은행인 원고 A이 G에 운영자금 150억 원을 단독으로 신규지원하며, 위 운영자금은 이 사건 처리기준에 따른 손익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6) 이 사건 협의회는 2010. 11. 8. 제5차 협의회에서 ① 채권금융기관 손익정산 등의 건, ② 기존채권 금융조건 재조정의 건, ③ 신규 RG 발급의 건, ④ 신규자금(운영자금 및 L/C 등) 지원의 건, ⑤ 기타 사항 처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는데, 그중 ① 채권금융기관 손익정산 등의 건에 대한 의결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금융기관 손익정산 등의 건

1. 의결권 산정 등

(1) 각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첨 1>의 2010. 7. 15. 기준으로 신고된 채권액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2) 향후 경영정상화 이전에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어 채권금융기관 간 손익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첨 1>의 채권금융기관별 채권비율에 따라 손익정산하기로 한다.

<별첨 1>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 현황(2010. 7. 15. 기준)

원고 A	28.86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	24.27
원고 B	18.47
원고 한국수출입은행	10.69
기업은행	5.59
피고 D	2.44
기술신용보증기금	2.43
H	1.91
피고 E	1.73
J	1.43
I	1.19
피고(반소원고)	0.99
합계	100.00

2. 채권금융기관 간 손익정산 및 선수금 관리

(1) 채권금융기관 손익정산 및 선수금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서 제정한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을 반영한 이 사건 처리기준을 따르기로 한다.

(이하 생략)

7) 피고 D은 위 제5차 협의회 의결 중 ①, ③, ④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고, 2010. 11. 18. 각 위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구 기촉법 제24조 제1항 등에 따라 피고 D이 G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피고 E은 위 제5차 협의회 의결 중 ①, ③, ④, ⑤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고, 2010. 11. 22. 각 위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구 기촉법 제24조 제1항 등에 따라 G에 대한 50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다. G의 파산 및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1) G에 대하여 2011. 6. 30. 창원지방법원 2011회합2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자율협약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자율협약이 종료되었다. 이후 G에 대하여 2012. 1. 30. 회생절차가 폐지된 다음 2012. 2. 15. 같은 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2) 이 사건 협의회는 탈퇴한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2011. 7. 7.을 기준으로 1차 손익정산을 실시하였고, 2013. 4. 30.을 기준으로 2차 손익정산을 실시하였다.

라. 원고 A의 손익정산 통보와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의 답변 내용

1) 원고 A은 1차 손익정산 후인 2011. 7. 29.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협의회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손익정산의 세부 절차를 통지하였다.

2) 피고(반소원고)는 2011. 8. 1. 원고 A의 위 공문에 대하여, '원고 A은 위 은행이 피고(반소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채권 매입가격 및 조건 등을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반소원고)는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협의회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손익정산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피고 E은 2011. 8. 5. 원고 A의 위 공문에 대하여, '손익정산의 대상에 피고 E의 탈퇴 후 신규지원된 돈은 제외되어야 하며,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채권매입이 손익정산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원고 A은 2011. 8. 1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협의회의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개최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위 피고들이 2011. 9. 22. 열린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2011. 9. 30. 위 피고들에게 '채권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지 않아 채권매수청구 시점에 손익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손익정산 분담금을 산출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는 287,042,843원(2010. 9. 3. 기준), 피고 D에 대하여는 19,329,043,108원(2010. 11. 22. 기준), 피고 E에 대하여는 2,178,789,585원(2010. 11. 22. 기준)의 손익정산금을 통보하였다.

5) 피고 D은 2011. 10. 4. 및 같은 달 10.경 원고 A에 대하여 위 손익정산금의 산출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손익정산금의 산출 방식에 대하여 다투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이 동의한 이 사건 자유험약과 제1차 협의회 의결은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채권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제1차 협의회 소집일 전일자인 2010. 7. 15.을 기준으로 G에 대한 채권 점유비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손익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점, 손익정산제도는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신규자금 지원 액수나 절차 진행 순서 등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별로 불균등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이익을 한꺼번에 정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이 제3, 5차 협의회 의결에 각 반대하고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협의회를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익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주장 손익정산의무는 이 사건 협의회의 구성원임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협의회의 제3, 5차 협의회 의결에 각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협의회를 탈퇴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손익정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협의회를 탈퇴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손익정산의무를 부담시킨다면, 위 채권금융기관들은 손익정산의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협의회 의결에 어떠한 참여도 하지 못하고 손익정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견해를 달리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하여 손익정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피고들이 부담할 손익정산금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의 손익정산의무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자유헌약 및 제1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원고들과 사이에 손익정산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서 탈퇴한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하여 손익정산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자유헌약과 제1차 협의회 의결의 내용 이 사건 자유헌약 제8조는 '위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 운용방법 및 절차는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제1차 협의회 의결은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 제Ⅲ의 2', 즉 손익정산 부분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손익정산 기준채권액은 2010. 7. 15.을 기준으로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자유헌약과 제1차 협의회 의결은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한 계약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유헌약을 체결하고 제1차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은 손익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자유헌약과 제1차 협의회 의결의 명시적 문언에 반하여 이 사건 협의회 구성원에 대하여만 손익정산의무가 부과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은 손익정산 시점과 방법에 대하여 협의회에 위임하고 있고,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협의회를 탈퇴할 당시까지는 이 사건 협의회에서 손익정산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에 대하여 의결한 바 없기는 하다. 그러나 각 채권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자유헌약과 제1차 협의회 결의에서 손익정산의 채권액 비율을 정할

기준시점을 2010. 7. 15.로 정하고 장래에 손익정산을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의 손익정산의무 자체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손익정산제도가 경영정상화 이전에 구조조정절차가 중단될 경우 각 채권금융기관별 손익배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을 고려하면, 장래에 손익정산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이 사건 협의회로 하여금 손익정산의 구체적인 실행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유보한 것일 뿐이 사건 협의회에서 위와 같은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손익정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L회계법인이 2013. 7. 23. 작성한 'G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체결 이후 진행경과'(갑 제11호증)에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정산일 이전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산대상 채권에서 제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이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을 제외하고 1차 및 2차 손익정산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보고서 기재나 위 사실만으로는 탈퇴한 원고들이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손익정산 의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거나 위 피고들이 손익정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처리기준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동의한 제3차 협의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는 손익정산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리기준은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인 점, 이미 제1차 협의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자율협약 제8조는 직접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익정산제도의 취지 손익정산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구성원 중 일부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협의회를 탈퇴하는 경우에 손익정산의 필요성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조선업 구조조정의 경우 각 채권금융기관이 RG를 제공한 선박의 건조순서에 따라 각 채권금융기관별 채권액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경영정상화 이전에 구조조정절차가 중단될 경우 각 채권금융기관별 손익배분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어느 채권금융기관의 반대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반대 채권자가 대상 조선업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반면, 남아 있는 찬성 채권자들은 반대 채권자의 RG의 위험을 그대로 떠안게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반대 채권자와 찬성 채권자들

사이의 정산에 관한 법률관계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어서 손익정산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을 제정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갑 제12호증)도 손익정산이 필요한 시점에 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절차에서 탈퇴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다.

3) 탈퇴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손익정산 절차 참여 및 손해 발생 가능성 손익정산 과정에서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협의회를 탈퇴한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이 배제되어 절차적 공정성이 저해된다거나 탈퇴한 채권금융기관이 손해를 입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통상적으로 공동관리절차의 존속을 전제로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므로(이 사건 자유헌약 제5조 참조), '공동관리절차 중단, M&A 등 손익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손익정산은 협의회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 별도의 의결이 필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를 탈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금융기관이 손익정산에 관한 협의회 의사결정에서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A은 2011. 7. 29.자 공문으로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게 손익정산 절차를 통보하였고, 2011. 8. 11.에는 이 사건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회의 개최를 통보하였는데,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위 절차 내에서 손익정산금의 산정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하여 다룰 수 있었을 것이나 2011. 9. 22. 열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채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손익정산금 산정 절차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손익정산의무 자체가 구조조정절차 중단시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한 손익배분의 형평성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어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협의회를 탈퇴한 채권금융기관이 언제나 손익정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손익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협의회를 탈퇴한 채권금융기관이 손익정산으로 인하여 항상 손해를 본다고 볼 수도 없다. 탈퇴한 채권금융기관은 손익정산 시점을 탈퇴 시점으로 조정하여 탈퇴 후 지원된 신규자금 등에 따른 손익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원고 A의 2011. 7. 29.자 손익정산금 지급 통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손익정산의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면서 손익정산의 절차 등에 관하여만 이의를 제기하다가 2015년경 제기된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야 손익정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의 위 공문에 대하여 이 사건 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손익정산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2011. 9. 22. 개최된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손익정산의무 존부 등에 관하여 다룰 수 있었음에도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으로 소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다. 손익정산금의 산정

1) 손익정산금 산정의 기준시점 이 사건 자유험약 제8조에서 준용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 및 이 사건 처리기준에 의하면, '협의회에서 공동관리절차 중단, M&A 등 손익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손익을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G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을 제외하고 1차 손익정산 및 2차 손익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손익정산에 대하여는 손익정산 시점에 관한 협의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손익정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손익정산 제도의 취지와 이에 따른 당사자의 의사,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법원이 사후적으로 손익정산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

손익정산금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이 각 결의에 부동의한 협의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익정산 시점은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이 부동의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서 탈퇴한 제3차, 제5차 각 협의회 의결일, 즉 피고(반소원고)의 경우 2010. 8. 27., 피고들의 경우 2010. 11. 8.이라 봄이 상당하다.

가) 구 기촉법 제24조는 '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반대채권자'만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협의회 의결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은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를 이미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이 의결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각 협의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손익을 분배하여 정산하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이 감정인 N(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사실조회요청에 대하여 적절히 회신을 하지 않아 감정인은 위 피고들의 자료를 참조하지 못하고 원고 A 및 L회계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손익정산금에 관하여 감정하였는데, 위 기초자료는 제3차 및 제5차 협의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위 각 협의회 의결 또는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이후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10년 이상 경과하여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G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원고들의 손익정산금 청구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감정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손익정산금을 산정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다) 피고(반소원고)는 제3차 협의회 결의일인 2010. 8. 27.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여 2010. 9. 3.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피고들은 제5차 협의회 결의일인 2010. 11. 8.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 D은 2010. 11. 18., 피고 E은 2010. 11. 22. 채권매수청구권을 각 행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각 협의회 결의일과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

라)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채권매수청구권이 형성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손익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매수청구로 인한 탈퇴는 손익정산이 필요한 시점 중 한 예시에 불과할 뿐이고,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채권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고 하여 그 시점을 기준으로 손익정산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손익정산의 방법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 및 이 사건 처리기준은 손익정산의 방법에 관하여 '채권양수도, 현금 정산 등 손익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협의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과 사이의 손익정산 방법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결의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손익정산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양수도의 방법에 의하여 손익정산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양수대금 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반소원고)도 반소로써 채권양수도의 방법에 의하여 손익정산금을 산정할 경우에 따라 채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는 채권양수도의 방법, 즉 손익정산 후 정산금액이 음수인 채권금융기관은 정산금액이 양수인 채권금융기관에게 해당 금액만큼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 상당의 정산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피고들은 현금 정산의 방법에 의하여 손익정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2015. 11. 30.자 준비서면 참조),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서 탈퇴한 이상 손익정산을 이유로 피고들이 G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는 것은 구 기촉법상 채권매수청구권을 규정한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와 달리 이 사건에서 반소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채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에 대한 손익정산금은 현금 정산의 방법, 즉 손익정산 후 정산금액에 청산배당률을 적용한 돈을 원고들의 점유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3) 피고(반소원고)의 손익정산금 가) 2010. 8. 27. 당시 각 채권금융기관별 손익정산금의 계산
감정인의 당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협의회를 탈퇴한 제3차 협의회 결의일인 2010. 8. 27.을 기준으로 한 각 채권금융기관의 최종 채권 잔액, 손익정산 후 최종 잔액, 정산금액 및 2010. 7. 15.을 기준으로 한 각 채권금융기관별 채권 점유비율은 다음 표의 각 항목과 같고,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1]과 같다.

원고 A	80,395,432	28.86	87,079,111	6,683,678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	78,217,517	24.27	73,235,937	(4,981,580)
원고 B	59,299,946	18.47	55,724,700	(3,575,246)
원고 한국수출입은행	35,326,502	10.69	32,242,266	(3,084,236)
기업은행	15,868,100	5.59	16,876,730	1,008,630
피고 D	4,866,671	2.44	7,372,300	2,505,629
기술보증기금	7,000,000	2.43	7,314,991	314,991
H	5,509,731	1.91	5,757,662	247,931
피고 E	5,000,000	1.73	5,224,994	224,994
I	3,443,517	1.19	3,598,471	154,954
J	4,066,000	1.43	4,297,828	231,828
피고(반소원고)	2,714,000	0.99	2,982,427	268,427

원고 A	80,395,432	28.86	87,079,111	6,683,678
합계	301,707,416[C]	100.00	301,707,416	-

위 표에 의하면, 각 채권금융기관은 이 사건 자출협약 및 제1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2010. 7. 15.을 기준으로 신고한 채권액에 기초하여 계산된 '손익정산 기준시점 점유비[B]'의 비율대로 채권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상당에 대하여는 손익정산의무를 부담하는데, 제3차 협의회 결의일인 2010. 8. 27. 당시 각 채권금융기관은 G에 대하여 '최종 채권 잔액[A]'만큼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2010. 8. 27. 당시 '최종 채권 잔액[A]'의 합계인 301,707,416,000원[C]에 '손익정산 기준시점 점유비[B]'를 곱한 금액인 '정산 후 최종 잔액[D]'과 '최종 채권 잔액[A]'의 차액이 각 채권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정산금액[E]'이라 할 것이다.

손익정산 합의에 따라 손익정산 후 최종 채권액과 개별 채권금융기관별 손익정산시점 채권 최종 잔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손익정산 합의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사이에 이를 분배하여야 하고 그 차액은 위 표의 '정산금액[E]'과 같은바,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4,981,580,000원, 원고 B은 3,575,246,000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은 3,084,236,000원 상당의 채권을 초과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반소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손익정산금 268,427,000원을 위 원고들 사이에 분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에 대한 손익정산금의 계산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정산금액은 위 원고들에 대한 정산금액 합계 11,641,062,000원(= 4,981,580,000원 + 3,575,246,000원 + 3,084,236,000원) 중 42.79%(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 이하 같다)를 차지하고 있고, 원고 B에 대한 정산금액은 30.71%,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은 26.4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손익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	268,427,000	42.79	114,868,435
원고 B	30.71	82,440,293	
원고 한국수출입은행	26.49	71,118,272	
합계			268,427,000

4) 피고들의 손익정산금 가) 피고 D의 외화대출금 채권의 처리방법

원고들은, 피고 D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G에 대하여 외화대출금 채권 2,578,150,495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청구권 행사 직후 원고들이 제5차 협의회에 따라 신규지원한 자금을 변제 채원으로 하여 위 외화대출금 채권을 변제받았는바, 위 채권을 손익정산 시점 당시 변제된 채권으로 볼 것인지 혹은 최종 채권 잔액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따라 피고들의 손익정산금이 달라지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D은 3,722,672,000원, 피고 E은 331,568,000원(제1 선택적 청구원인), 또는 피고 D은 1,542,778,000원, 피고 E은 370,661,000원(제2 선택적 청구원인)을 각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7호증5) 은 피고 D이 이 사건 제1심이 진행 중이던 2015. 11. 27. 작성한 자료인데, 위 자료에는 피고 D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010. 11. 18. G에 대하여 외화대출금 채권 2,578,150,495원(USD 1,351,040, JPY 66,240,000, EUR 77,710의 합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감정인의 당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을나 제7호증의 기재와 달리 피고 D이 2011. 8. 16. L회계법인에 회신한 은행조회서에는 피고 D은 2010. 11. 18. G에 대하여 외화대출금 채권 2,235,054,000원(USD 1,212,883, JPY 66,240,000, EUR 77,710의 합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감정인은 L회계법인에 회신한 은행조회서의 작성일이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인 2010. 11. 18.에 더 근접한 점, 피고 D 내부의 원장자료보다는 외부 회계법인에 회신한 조회서가 더 신빙성이 있는 점을 근거로, L회계법인에 회신한 은행조회서에 따라 피고 D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인 2010. 11. 18. 당시 G에 대하여 외화대출금 채권 2,235,054,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위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과 가까운 제5차 협의회 의결일 2010. 11. 8.에도 피고 D은 같은 금액의 외화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제하였다.6) 위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보건대, 피고 D은 손익정산 기준시점인 제5차 협의회 의결일, 즉 2010. 11. 8. 당시 G에 대하여 위 외화대출금 채권 2,235,054,000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채권이 이후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손익정산 시점에서는 변제된 채권이라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2 선택적 청구원인에 따라 위 채권을 최종 채권 잔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나) 2010. 11. 8. 당시 각 채권금융기관별 손익정산금의 계산

감정인의 당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D의 외화대출금 채권을 2010. 11. 8. 당시 최종 채권 잔액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협의회를 탈퇴한 제5차 협의회 결의일인 2010. 11. 8.을 기준으로 한 각 채권금융기관의 최종 채권 잔액, 손익정산 후 최종 잔액, 정산금액 및 2010. 7. 15.을 기준으로 한 각 채권금융기관별 채권 점유비율은 다음 표의 각 항목과 같고,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2]와 같다.

원고 A	99,469,054	29.15	89,506,785	(9,962,269)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	74,878,184	24.52	75,277,678	399,493
원고 B	40,508,339	18.65	57,278,246	16,769,907
원고 한국수출입은행	44,603,280	10.79	33,141,146	(11,462,134)
기업은행	16,539,969	5.65	17,347,236	807,267
피고 D	6,035,054	2.47	7,577,832	1,542,778
기술보증기금	7,000,000	2.45	7,518,926	518,926
H	5,509,731	1.93	5,918,180	408,449
피고 E	5,000,000	1.75	5,370,661	370,661
I	3,443,517	1.20	3,698,793	255,276
J	4,066,000	1.44	4,417,646	351,646
피고(반소원고)	-	-	-	-
합계	307,053,128[C]	100.00	307,053,128	-

위 표에 의하면, 각 채권금융기관은 이 사건 자율협약 및 제1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2010. 7. 15.을 기준으로 신고한 채권액에 기초하여 계산된 '손익정산 기준시점 점유비[B]'의 비율대로 채권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상당에 대하여는 손익정산의무를 부담하는데, 제5차 협의회 결의일인 2010. 11. 8. 당시 각 채권금융기관은 G에 대하여 '최종 채권 잔액[A]'만큼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2010. 11. 8. 당시 '최종 채권 잔액[A]'의 합계인 307,053,128,000원[C]에 '손익정산 기준시점 점유비[B]'를 곱한 금액인 '정산 후 최종 잔액[D]'와 '최종 채권 잔액[A]'의 차액이 각 채권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정산금액[E]이라 할 것이다.

손익정산 합의에 따라 손익정산 후 최종 채권액과 개별 채권금융기관별 손익정산시점 채권 최종 잔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손익정산 합의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사이에 이를 분배하여야 하는바, 그 차액은 위 표의 '정산금액[E]'와 같다. 따라서 원고 A은 9,962,269,000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은 11,462,134,000원 상당의 채권을 초과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 D이 지급하여야 하는 손익정산금 1,542,778,000원, 피고 E이 지급하여야 하는 손익정산금 370,661,000원을 위 원고들 사이에 각 분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 정산의 방법에 의하여 손익정산할 경우 위 각 돈에 청산배당률을 적용한 금액이 최종 손익정산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손익정산금의 계산

원고 A에 대한 정산금액은 위 원고들에 대한 정산금액 합계 21,424,403,000원(= 9,962,269,000원 + 11,462,134,000원) 중 46.49%를 차지하고 있고,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정산금액은 53.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피고 D의 손익정산금 1,542,778,000원을 위 원고들에 대하여 안분하면 피고 D은 원고 A에게 717,386,125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825,391,875원을 손익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손익정산의 방법으로 현금 정산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청산배당률에 관하여는 원고 A이 2014. 10. 29.자 통고문에서 제시한 5.38%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 것 외에는 아무런 주장이 없다. 그러나 증거공통의 원칙상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620 판결 등 참조), 현금 정산의 방법으로 손익정산금을 산정할 경우 적정한 청산배당률에 관하여 보건대, L회계법인이 작성한 '반대매수청구채권 적정 매수가액 검토'(갑 제13호증)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손익정산 시점인 제5차 협의회 의결일 2010. 11. 8.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후순위채권 배당률은 6.97%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다른 보고서인 M회계법인 작성의 '청산가치 및 청산배당률 산정 보고서'(갑 제16호증)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 A이 사적으로 의뢰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감정인이 제1심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17. 9. 12.자 감정보고서는

청산배당률에 관하여 감정 불능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L회계법인 보고서의 후순위 채권 배당률 6.97%를 무담보채권의 회수율로 보아 손익정산금의 현금 정산에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D은 원고 A,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청산배당률 6.97%를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손익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1,542,778,000	46.49	717,386,125	50,001,813
원고 한국수출입은행	53.50	825,391,875	57,529,814	
합계			1,542,778,000	107,531,627

원고 A에 대한 정산금액은 위 원고들에 대한 정산금액 합계 21,424,403,000원(= 9,962,269,000원 + 11,462,134,000원) 중 46.49%를 차지하고 있고,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정산금액은 53.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피고 E의 손익정산금 370,661,000원을 위 원고들에 대하여 안분하면 피고 E은 원고 A에게 172,356,009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198,304,991원을 손익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L회계법인이 작성한 '반대매수청구채권 적정 매수가액 검토'(갑 제13호증)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손익정산 시점인 제5차 협의회 의결일 2010. 11. 8.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후순위채권 배당률은 6.97%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무담보채권의 회수율로 보아 손익정산금의 현금 정산에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E은 원고 A,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청산배당률 6.97%를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손익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370,661,000	46.49	172,356,009	12,013,214
원고 한국수출입은행	53.50	198,304,991	13,821,858	
합계			370,661,000	25,835,072

5)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결론 그렇다면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114,868,435원, 원고 B에게 82,440,293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71,118,2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원고 A에게 50,001,813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57,529,8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은 원고 A에게 12,013,214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13,821,8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익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요지

1) 피고(반소원고)는 2010. 9. 3. 구 기촉법 제24조 제1항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차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고 G에 대한 채권 합계 2,779,878,026원(= 미수금 원금 27억 1,400만 원 + 2010. 9. 3.까지 연체이자 65,878,026원)에 대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안전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채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채권 매매대금은 위 채권 합계 2,779,878,026원에 대하여 K회계법인 작성의 'G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을가 제7호증)에 따라 무담보채권 회수율 19.2%를 적용하여 533,736,580원(= 2,779,878,026원 × 19.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채권 매매대금 533,736,5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가 손익정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경우,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에게 손익정산금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들로부터 G에 대한 그 손익정산금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반소원고)의 채권 매매대금은 3,048,305,026원(=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779,878,026원 + 손익정산금 상당의 채권 268,427,000원)에 무담보채권 회수율 19.2%를 적용한 585,274,564원(= 3,048,305,026원 × 19.2%)이라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채권 매매대금 채권 585,274,5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익정산금 채권 268,427,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채권 매매대금으로 그 차액인 316,847,564원(= 585,274,564원 - 268,42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채권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반소원고)가 2010. 8. 27. 제3차 협의회 신규자금지원 의결에 반대하고 2010. 9. 3. 원고 A를 상대로 구 기촉법 제24조 제1항 등이 정한 바에 따라 미수금 채권 2,714,000,000원 및 연체이자 65,878,026원 합계 2,779,878,026원에 대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 기촉법 제24조에 따른 채권매수청구권은 그 문언 해석상 형성권이라기보다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해서는 채권매수절차를 진행하거나 매수·상환의 가격 및 조건을 협의할 의무를,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 반대 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할 의무를 각각 부여하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 기촉법이 실효된 후 제정된 기촉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은 비판이 있었던 반대 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와 관련하여 제20조 제1항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매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구 기촉법하에서도 조정위원회가 신법의 취지에 따라 반대 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를 해석·운용하였으므로, 피고(반소원고)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010. 9. 3. 피고(반소원고)와 제3차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채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채권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 매매대금의 결정

- 1) 채권 매매대금 결정의 기준시점 피고(반소원고)가 2010. 9. 3.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회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협의(구 기촉법 제24조 제4항)가 이루어졌다거나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결정(같은 조 제5항)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의 가치와 재산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인정한 적정한 가액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매매대금 결정의 기준시점은 피고(반소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2010. 9. 3.이라고 볼 것이다.
- 2) 매수청구한 채권의 범위 확정 피고(반소원고)는 매수청구일인 2010. 9. 3. 기준 G에 대한 미수금 채권 원금 2,714,000,000원 및 연체이자 65,878,026원 합계 2,779,878,026원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협의회는 2010. 7. 20. 제1차 협의회 의결을 통해

채권금융기관들의 G에 대한 채권의 상환기한을 2010. 10. 15.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반소원고)도 위 의결에 찬성하였으므로, 피고(반소원고)는 위 채권 중 미수금 채권 원금 2,714,000,000원에 대하여서만 적법하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머지 연체이자 부분에 대한 매수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익정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원고들로부터 G에 대한 그 손익정산금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게 되는 것이므로, 본소청구에서 인용된 손익정산금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도 채권 매수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68,427,000원 상당의 손익정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지급의무와 동일한 268,427,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게 되므로, 피고(반소원고)는 위 268,427,00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반소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의 매매대상은 2,982,427,000원(= 미수금 채권 원금 2,714,000,000원 + 손익정산으로 양수받는 채권 268,427,000원)이다.

3) 적정한 채권 매매대금의 결정 가) 피고(반소원고)는 K회계법인이 작성한 'G 경영정상화방안 검토보고서'(을가 제7호증)에 기재된 무담보채권의 회수율 19.2%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는 반면, 원고들은 L회계법인이 작성한 '반대매수청구채권 적정 매수가액 검토'(갑 제13호증, 후순위채권 배당률 6.43%) 및 M회계법인이 작성한 '청산가치 및 청산배당률 산정 보고서'(갑 제16호증, 후순위채무 청산배당률 3.47%)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제1심 계속중이던 2016. 7. 20. G의 청산가치 및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에 대한 감정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감정인은 2017. 9. 12.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청산가치 산정기준일 현재 시점에서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G 담당자가 없으므로, 감정범위가 제한되어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워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각 보고서 및 감정인의 2017. 9. 12.자 감정보고서에서 제시한 회수율 또는 배당률과 작성일 및 기준일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	K회계법인 작성의 'G 경영정상화방안 검토보고서' [을가 제7호증]	무담보채권 회수율 19.2%	[작성일] 2010. 10. 29. [기준일] 2010. 6. 30.
2	L회계법인 작성의 '반대매수청구 채권 적정 매수가액 검토' [갑 제13호증]	후순위채권 배당률 6.43%	[작성일] 2013. 7. 23. [기준일] 2010. 8. 27.
3	M회계법인 작성의 '청산가치 및 청산배당률 산정 보고서' [갑 제16호증]	후순위채무 청산배당률 3.75%	[작성일] 2018. 6. 8. [기준일] 2010. 8. 27.
4	감정인 작성의 2017. 9. 12.자 감정보고서	감정 불능	[작성일] 2017. 9. 12.

나) 먼저 피고(반소원고)가 적용을 주장하는 K회계법인 작성의 'G 경영정상화방안 검토보고서'(을가 제7호증)상의 무담보채권 회수율 19.2%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의 제1심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K회계법인은 위 보고서의 서두에서 '위 보고서 작성시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만약 위 기준에 따랐다면 본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추가적인 발견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수 있으며, 위 보고서는 이 사건 협의회가 G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기재하여 둔 사실, 피고 A의 위 보고서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도 2011. 11. 18. '위 보고서를 반대채권자 채권 매수가액 산정에 위 보고서상의 청산가치 회수율을 적용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며, 위 보고서는 2010. 6. 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G이 감사받은 결산 재무제표가 아닌 가결산 재무제표 및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작성된 것이며, 위 평가기준일 이후의 재산상태에 대한 변동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 등을 포함한 다른 가정 및 절차 등이 변경될 경우 청산가치 회수율 등에 대한 결과가 중대하게 변동될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 한편 감정인은 2017. 9. 12.자 감정보고서에서 위 보고서에는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K회계법인의 보고서는 ① 작성자인 K회계법인 스스로 위 보고서상의 무담보채권 회수율 19.2%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매매대금을 산정하는 용도로 도출된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점, ② 위 보고서는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의한 감사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고, 위 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된 자료 역시 감사를 받지 않은 2010. 6. 30.자 가결산 재무제표이므로, 평가 근거자료 및 평가방법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위 보고서의 무담보채권 배당률 19.2%가 적정하게 산출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감정인은 위 보고서에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하여 위 보고서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위 보고서가 피고(반소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인 2010. 9. 3.에 가장 근접한 2010. 10. 29.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준일은 2010. 6. 30.이므로 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위 보고서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평가기준일 2010. 6. 30.은 위 행사일과 약 2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시점이어서 L회계법인 보고서의 기준일인 2010. 11. 8.과 위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 매매대금 산정시 K회계법인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M회계법인 작성의 '청산가치 및 청산배당률 산정 보고서'(갑 제16호증)는 G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원고 A의 의뢰에 따라 제한적인 자료를 근거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채권 매매대금 산정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 L회계법인 작성의 '반대매수청구채권 적정 매수가액 검토'(갑 제13호증)에 기재된 후순위채권 배당률 6.43%를 채권 매매대금 산정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제1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L회계법인의 보고서가 G에 대한 용선계약 지급보증만을 반영하고 있어, 일부 우발채무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한 사실, 위 보고서는 L회계법인이 2011. 3. 25. 작성한 'G 경영정상화 가능성 검토 보고'상 산정된 2010. 12. 31.자 청산가치에 기초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동의 의사를 표시한 제3차 협의회 의결일인 2010. 8. 27.을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L회계법인의 보고서는 피고(반소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로부터 약 3년 정도 경과한 2013. 7. 23.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평가 기준시점은 2010. 12. 31. 또는 당시의 청산가치를 재평가한 2010. 11. 8.이므로, 작성일이 G의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일보다 뒤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보고서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도 제1심에서 제출한 2016. 2. 2.자 준비서면에서 'L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미 G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어 객관적인 관련 자료 등이 남아 있지 않은 이상, 위 L회계법인의 보고서에 기재된 후순위채권 배당률 6.43%를 무담보채권의 회수율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채권 매매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인다.

마) 그렇다면 L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후순위채권 청산배당률 6.43%를 적용하여 채권 매매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인바, 위 배당률을 적용하면 채권 매매대금의 원금은 191,770,056원[= 2,982,427,000원(= 미수금 채권 원금 2,714,000,000원 + 손익정산으로 양수받는 268,427,000원) × 무담보채권의 회수율 6.43%,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구 기촉법 제24조 제2항 후문은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에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매매대금의 이행기는 G의 경영정상화 이행기간이 종료된 때라고 볼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자율협약이 종료된 2011. 6. 30.에 경영정상화 이행기간도 종료되어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그 다음 날인 2011. 7. 1.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G에 대한 회생절차가 신청된 2011. 6. 3. 이행기가 도래함을 전제로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자율협약 제2조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때에 위 자율협약이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의 본소청구에서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익정산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경우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 매매대금 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익정산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92조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피상계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반소원고)가 자동채권으로 삼고 있는 채권 매매대금 채권은 구 기촉법 제24조의 해석에 따라 찬성채권자인 채권금융기관들이 공동하여 부담하는 불가분채권이므로, 위 불가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찬성 채권자 중 일부에 불과한 원고들이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익정산금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피고(반소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채권 매매대금으로 191,770,056원과 이에 대한 2011.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손익정산금으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114,868,435원, 원고 B에게 82,440,293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71,118,272원, 피고 D은 원고 A에게 50,001,813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57,529,814원, 피고 E은 원고 A에게 12,013,214원, 원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13,821,8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 부분의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8. 14.부터 각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는 손익정산 기준시점인 2010. 8. 27.의 다음 날부터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손익정산 기준시점인 2010. 11. 8.의 다음 날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손익정산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채권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바(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일부 확장하였으나 최초 청구 범위 내에서 인용되므로 피고 D도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부담한다),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채권 매매대금으로 191,770,056원 및 그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174,510,200원에 대하여는 위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 날인 2011. 7. 1.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나머지 17,259,856원에 대하여는 위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 날인 2011. 7.

1.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정선재

판사최승원

판사최웅영

별지

1)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D과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병합하여 구하는 각 청구는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어느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다른 청구를 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선택적 병합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원고들이 지칭한 바와 같이 '제1 선택적 청구원인' 또는 '제2 선택적 청구원인'이라 지칭한다.

2) 피고 E은 상호가 채권금융기관 자유험약 체결 당시에는 '주식회사 F'이었다가 2015. 9. 1.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E'이라 한다.

3)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은 조선사가 선주로부터 선박의 제작·공급을 발주받고 선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선박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금융기관이 조선사의 선주에 대한

선수금반환의무를 보증하는 제도이다. 선수금환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이 선주에게 RG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조선사에 대하여 RG구상금채권을 갖게 된다. 이하 'RG'라고만 한다.

4) 구 기촉법 제24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22조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은 협의회의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하며, 그 기간 이내에 채권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의 매입가격 및 조건을 반대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에 찬성한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에 매수하도록 한다.

③ 협의회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그 밖에 협의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반대채권자의 채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당해 기업이 상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상환의 가격 및 조건은 협의회와 반대채권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채권의 매입·상환의 가격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가격과 잠정가격과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가 채권의 매입·상환의 가격 및 조건을 결정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협의회와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당해 부실장후기업의 가치 및 약정의 이행가능성을 평가하여 산정한 가격과 매입기관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여신거래내역(을나 제7호증의 1), 일람불외화지급보증 잔액(을나 제7호증의 2),

대출실행내역조회(을나 제7호증의 3)

6) 2020. 1. 7.자 감정평가서 10, 48, 49쪽